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79

발의연월일: 2022. 11. 25.

발 의 자:윤관석·강준현·김상희

김정호 · 김홍걸 · 오영환

이동주 • 이학영 • 임호선

장철민 · 정춘숙 · 정태호

최종유 · 최혜영 의원

(149]

제안이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임.

특히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리의 경우, 국가의 경제안보와 국민의 생활안정과 직결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임.

이에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의 위기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시 책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관계기관을 대통령 소속기관까지 확대함. (안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산하에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신설을 명시함(안 제8조제4항).
- 다.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범위를 공급망안정품목까지 확대하고, 이행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 항).
- 라. 국가 경제·안보 등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 마. 비상시 신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국외기업과 인수·합병 등을 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해외생산품목의 국내 반입명령 근거를 신설함(안 제21조의2 신설).
- 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이하 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의견"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제1호 및 제10호 중 "강화"를 각각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전문위원회와"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로, "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목의 사업자"를 "품목 및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의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화조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 또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 2.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 3.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 4. 중・장기 수급 여건 전망
 - 5.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공급망안정품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비상 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① 정부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및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

른 지원을 받은 기업에 해당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생산품목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국내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이 제20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재 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 1. 해외 공급망안정품목 생산 정보의 수집ㆍ제공
 - 2. 무역거래 알선·중개 및 컨설팅 지원
 - 3.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성능검증 · 인증 · 실증 지원
 - 4.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외기업의 소재·부품·장비 사업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 지원
 - 5.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제공, 금융 등의 지원

- 6. 그 밖에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의 공급망 위기대응능력 향상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협의체(이하 "공급망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소재·부품· 장비분야의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경 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 및 해외투자보험 조건 등을 우 대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및 공급망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
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	
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	조
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	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
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	화
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②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	중앙행정기관(이하
<u>문계획</u> 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제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	의견
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3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u>강</u>	1 <u>강</u>
<u>화</u> 를 위한 기본방향	화 및 공급망 안정화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10
분야의 경쟁력 <u>강화</u> 를 위하여	<u>강화 및 공급망</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 략)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경쟁력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소재 ·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⑤ ~ ⑦ (생 략)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 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핵심전략 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 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

<u>안정화</u>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u>다음 각 호와 같이 둘</u>
1.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
정) ①

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핵심전략기 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나 수요 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 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장 에서는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5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화를 위 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 6. (생략)
- ② (생 략)

<신 설>

<u><신 설></u>

품목 및 제12조의2제1항
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의 사업
<u> 자</u>

- 1.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급안 정화조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수 있다.

- ②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한다.
- 1.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또는 핵심전략기술 관
 런 품목의 생산 및 수급에 미
 치는 영향
- 2.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 3.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 부터의 수입 비중
- 4. 중·장기 수급 여건 전망
- 5.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영향
-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 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공급망 안정품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 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절 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u><신 설></u>

로 정한다.

제21조의2(비상 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① 정부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및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에 해당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생산품목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국내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이 제20조제 1항, 제23조의2제1항제4호 및제5호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④ 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

하여야 한다.

<신 설>

- 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제 3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절차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2(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 험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해외 공급망안정품목 생산 정보의 수집·제공
 - 2. 무역거래 알선·중개 및 컨설팅 지원
 - 3.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성능 검증·인증·실증 지원
 - 4.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외기업의 소재·부품 ·장비 사업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 지원
 - 5.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기업이 소유한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제공, 금융 등의 지원
 - 6. 그 밖에 수입 위험 완화를 위

<u>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u> 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 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 향상과 민관 협 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기 관·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소재· 부품·장비 공급망협의체(이하 "공급망협의체"라 한다)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
- ③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 및 해외투자보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및 공급망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